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시 그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설치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인수받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음.
- 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주민들의 넘비현상으로 소각시설 가동지연 및 중단시 쓰레기처리 대란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엄청난 주민생활 불편 등 환경오염 유발 우려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개발권자로부터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받아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포함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과 유지관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단지 또는 택지개발 지구별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환경오염유발 우려 및 유지관리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음. (안 제3조)

나. 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하였음. (안 제4조)

-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시설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명시

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였고,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권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였음. (안 제4조)

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나. 내용타당성

- 일정규모(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시 그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명시함과 그 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개발권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였음.
- 또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